



# 보도자료

보도일시	2008.10.10(금) 석간		
배포일시	2008. 10. 9(목) 16:00	담당부서	국고국 회계제도과
담당과장	서철환 (2150-5210)	담당자	박창규 사무관 (2150-5212)

## 제목: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을 위한 국가 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추진

### 1. 개요

- 기획재정부는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을 위한 국가 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08.10.13자로 입법예고('08.10.13~11.2)를 하고,
  - 개정안은 법제처 및 규제위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

### 2. 개정안 주요내용

-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계약의 범위 확대
  - 당초 단품물가조정제도가 도입된 '06.12.29 이후의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던 것을 '06.12.29 이전에 입찰공고하고 이 영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모든 계약에 적용되도록 함
  - \* 통상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3%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단품물가조정제도의 경우 공사계약에서 특정자재의 가격이 15%이상 변동되는 경우 동 자재에 대해서만 계약금액을 조정
- 물품구매에 역경매제도\* 도입
  - 조달비용의 절감 및 구매절차의 간소화 등 제정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부문 계약의 다양성 추가

\* 일명 「내려가는 경매」로, 물건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들이 호가를 낮춰가며 경쟁하도록 하고, 최저가를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원자재가격 급등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조정시의 가격산정방식은 입찰당시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신속적인 물가조정이 어려운 바,

\* 기준 : 예정가격 결정기준(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 방법 : 가격산정방법

○ 원자재가격 급등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시의 가격산정방법\*을 입찰당시와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예시) 입찰시 2개월간 거래실례가격(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가격산정을 하지만, 조정시에 1개월간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물가변동치를 산정

-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원활한 계약 이행이 가능토록 함

□ 공사비 절감보상제도\*를 보완하여 신기술·신공법 등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절감 이외에 기존 공법 등의 개선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에도 동 보상제도를 인정

○ 예산절감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

\* 설계변경시 신기술·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이 현저한 경우 당해 절감액의 70%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 법령상의 불비한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계약관행이나 현실에 부합하게 규정을 정비

○ 완공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중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더라도 남은 차수의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함

- 장기계속계약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관급자재 구입비용은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통상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제한사유를 중복해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제한 등 다른 제한사유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별첨>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08. 10.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08. 10. .

[Empty Box]

##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물품구매계약에 역경매제도 도입, 공사비 절감의 70%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고 30%의 예산을 절감하는 공사비절감 사유에 ‘기타 공사비 절감방안’ 추가로 국가계약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기타 장기계속계약에서 예정가격 결정방법 및 부정당업자와의 계약 체결 가능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장기계속계약에서 예정가격 결정방법 명확화(안 제8조)

(1) 장기계속계약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현행 조문은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의 범위라고만 하고 있어 예산상 계상되어 있기만 하면 관급자재 구입비용까지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혼동될 문제점이 있음

(2)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던 것을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에서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토록 함

- (3)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관급자재 구입비용은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나. 물품구매에서 역경매제도 도입(안 제10조)

- (1)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계약제도의 투명화를 위해 역경매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2) 역경매참가자가 제시한 계약금액중 최저가를 공개하고, 더 이상 낮은 금액을 제시한 자가 없을 때까지 새로운 가격제시를 허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물품구매계약에서 역경매를 활용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 (3)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서는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갖도록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함

#### 다. 공사비 절감사유에 기타 공사비 절감방안 추가(안 제14조제6항 제3호, 제65조제1항 단서·제4항·제5항)

- (1) 공사비 절감제도는 신기술·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이 현저한 경우 설계변경시 당해 절감액의 70%를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 신기술·신공법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설계비 변경에 실제 활용사례가 저조한 실정임
- (2) 신기술·신공법외에 기존공법의 개선 등에 의한 예산절감 등에도 공사비 절감 보상제도를 적용
- (3) 기존공법 개선을 통한 공사비 절감시에도 보상제도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예산절감 및 동 제도 활성화에 기여

라. 장기계속계약에서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체결 가능여부 명확화  
(안 제76조제10항 단서 신설)

- (1) 장기계속계약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자는 다음연도 이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변경절차, 계약이행의 일관성 상실, 계약상대자 변경에 따른 공사이행 책임 관련 분쟁 등으로 원활한 공사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 (2) 장기계속계약의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당해 장기계속계약은 이행할 수 있도록 명시

마.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안 부칙 제3조)

- (1) 최근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건설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있는 상황에서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은 계약이행 기간이 길어 '06.12.29 이전에 체결된 것중에도 많은 계약이 현재까지 계약이행 진행중에 있음에도 제도개선의 혜택을 볼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
- (2) “06.12.29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단품물가조정제도를 적용”토록 한 것을 “06.12.29이전 입찰공고하고 계약체결한 계약중 현재까지 진행중인 공사계약”에도 단품 물가조정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3) 단품적용시기를 확대해 줌으로써 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10.13 ~ 2008.11.2)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총제조금액등의”를 “총제조금액등에서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입찰방법”을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 부칠수 있다.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 중 “새로운 기술·공법”을 “새로운 기술·공법, 기타 공사비 절감방안”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단서 중 “기술·공법”을 각각 “기술·공법, 기타 공사비 절감방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술·공법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술·공법, 기타 공사비 절감방안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기타 공사비 절감방안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에 대하여는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고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제76조제10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제한 전에 체결된 장기계속계약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당해 장기계속계약의 이행을 위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역경매제도에 대한 적용례)제10조 제3항 규정은 2009.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19782호 부칙 제4조의 특례) 대통령령 제19782호로 개정된 제64조 제6항 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현재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계약에 적용한다. 이 경우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청구는 2006.12.29이후 조정 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가능하며, 조정기준일 기산은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64조제1항에 의해 이 영 시행일 이전에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동 조정일로부터 기산한다.

1. 2006.12.29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 2006.12.29을 입찰일과 계약 체결일로 본다.
2. 2006.12.29 이전에 입찰하고, 2006.12.29이후 계약체결된 경우 입찰일을 2006.12.29로 본다.





등을 직접 산출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 14조제6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입찰을 할 때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②·③ (생략)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

-----  
-----  
-----.

⑦·⑧ (현행과 같음)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① -----  
-----  
-----  
-----  
-----  
-----  
-----  
-----  
-----기술·공법,  
기타 공사비 절감방안 -----  
-----  
-----기술·공법,  
기타 공사비 절감방안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로운 기술·공법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⑥·⑦ (생략)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 ⑨ (생략)

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 기술·공법, 기타 공사비 절감방안 등-----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기타 공사비 절감방안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에 대하여는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고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⑪ (생략)

-----  
 -----  
 -----  
 -----  
 -----

---. 다만, 입찰참가자격제한 전에 체결된 장기계속계약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당해 장기계속계약의 이행을 위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⑪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연락처	(02) 2150 - 52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2008. 10

기 획 재 정 부

## 1. 개정이유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하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의 경우 지역제한 등 다른 제한사유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2.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시 중복제한 가능 명확화(안 제25조)

(1) 통상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제한사유를 중복해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의 경우 다른 제한사유와 동시에 적용하여도 제한경쟁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적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한으로 실질상 국가계약법령상 제한사유가 아님

\*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함(제6조제2항)

(2)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시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로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나. 원자재 가격급등 등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74조제7항)

- (1)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입찰당시 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 천재지변, 원자재 가격급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이 지체되는 등 원활한 계약이행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 (2) 천재지변,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당시의 가격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3)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원활한 계약이행이 가능토록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10.13 ~ 2008.11.2)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단서 중 “제21조제1항제6호”를 “제21조 제1항 제6호”로, “동항제2호”를 “동항 제2호”로, “제한할”을 “제한할 수 있으며, 영 제21조 제8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로 한다.

제74조제7항 중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을 “물가변동 당시가격의 산정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적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⑧ ~ ⑩ (생략)

----- . 다만, 천재·지  
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  
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⑧ ~ ⑩ (현행과 같음)